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종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73 발의연월일: 2025. 4. 9.

발 의 자 : 윤종오 · 정춘생 · 강득구

김준혁 • 전종덕 • 정혜경

한창민 • 임미애 • 김준형

김재원 · 조계원 · 황운하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,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였음.

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연금과 사무실 및 기념사업 지원 등의 예우를 박탈하도록 하고 있으나, 경호와 경비 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하도록 정하고 있음.

친위 쿠데타를 시도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려 파면된 사람을 오직 전 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를 들여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와 경비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대통령이 임기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

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,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 함(안 제7조제2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67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 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도 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직 대통령 예우 제외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 탄핵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)	제7조(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	②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	
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	
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	
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	
지 아니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제1호에 해당하</u>
	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
	에 따른 예우도 하지 아니한다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